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38
----------	-----

제출년월일 : 2005. 11.25.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정사유

지역전통문화의 상품개발 및 외래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건립 중인 고성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코자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성탈박물관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나. 고성탈박물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다. 고성탈박물관 관람 및 매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라. 고성탈박물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고성탈박물관 관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바. 고성탈박물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사. 고성탈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4. 입법예고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5-391호 (8.24 ~ 9.12)
- ⇒ 의견 제출사항 있음

5. 본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고성탈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박물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666-18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을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2. “수장품”이라 함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일반인”이라 함은 어린이, 군인, 청소년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6. “어린이”라 함은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3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관람료”라 함은 박물관에 전시된 수장품 외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용료”라 함은 박물관내 기숙사, 특별전시실을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사무)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박물관 내·외 각종 시설의 관리
2.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다른 전시관 및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정보의 교환
4.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기타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 (관장)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② 위촉된 관장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하루
2. 제1호를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표시간 : 09:00 ~ 17:00
2. 관람시간 : 09:00 ~ 18:00

②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박물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박물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징수일지를 비치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 징수금액은 다음날 16:00까지 고성군(이하"군"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6:00시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즉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 사정으로 퇴관할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제9조 (관람권) ① 관람권 【별표3】은 일반인·군인·청소년 및 어린이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② 단체관람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단체관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은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박물관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제3호서식】의 관람권수불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65세 이상인 경로자와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인 어린이
5.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유족증서 소지자
6.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중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 카드를 소지한 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관람요금 등의 게시) 관람료 및 시설이용 요금표는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도록 박물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취한 사람, 정신이상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이외에서 취사 또는 취식하는 행위
4. 기타 공공질서 문란 및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조치) ①관람자나 시설물이용자가 박물관 전시물 및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전시물 및 각종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장품 구입) 군수는 박물관에 전시할 표본과 탈 관련 유물, 기타 중요한 수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한다.

제16조 (수장품 기증 등) ①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증받거

나 위탁 보관할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기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장품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장품의 관리) ①군수는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수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장품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편의시설 등) ①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고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고성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로 책임 하에 박물관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⑤ 박물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20조 (재산의 관리)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박물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위원은 탈 및 민속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와 관련 학계전문가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자료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4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평가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료수집 등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다.

② 간사는 박물관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보조한다.

제2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6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규정은 박물관 개관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관람요금표

<단위:원>

구분	개인			단체		
	일반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	일반인	군인 청소년	어린이
관람료	2,000	1,000	1,000	1,000	500	500

주) ·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 · 청소년 : 13세이상 20세미만
 · 어린이 : 5세이상 13세미만 · 단 체 : 30인이상 동시입장

【별표 2】

시설이용료

<단위:원>

구분	기본사용료			전용사용료
	하절기	동절기	기준	
기숙사	30,000	40,000	1일(1동)	기본사용료×사용일수
특별전시실	50,000			기본사용료×사용일수

【별표 3】

관람권

<앞면>

○	관람권 일련번호: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관람권 및 영수증 일련번호: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박물관전경
○	고성군수	고성군수	

<p style="text-align: center;">관람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시간 - 09:00 ~ 18:00 ○ 휴관일 - 월요일 및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하루 ○ -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면적 : 4,902m² ○ 건축면적 : 1,736.94m² ○ 상설전시실 : 393.9m² ○ 기획전시실 : 215.5m²
---	--

※ 일반인, 군인 및 청소년, 어린이 구분

【별지 제1호 서식】

관람(시설이용)료 징수 일지

<단위:명/원>

구 분		당 일			누 계	
		인 원	관람료 (시설이용료)	금 액	인 원	금 액
일반인	계					
	개 인					
	단 체					
군 인 청소년	계					
	개 인					
	단 체					
어린이	계					
	개 인					
	단 체					
면 제	계					
	어린이					
	노 인					
	기 타					

【별지 제4호 서식】

유 물 기 증 서

주소
성명

귀하께서는 군민에게 문화와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귀중하게 소장하고 있는 유물 ○점을 고성탈
박물관에 기증하였으므로 유물 기증서를 드립니다.

200 년 월 일

고 성 군 수

